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6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4.

발 의 자: 민홍철·문진석·복기왕

한정애 · 정준호 · 허성무

한준호 • 박홍근 • 손명수

전재수 · 이재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부재함.

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 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 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65조).

법률 제 호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원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기획재정부장관
- 2. 예금보험공사
- 3. 한국은행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65조(자료협조) 기획재정부장관 | 제65조(자료협조) ① | | |
| 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 | | | |
| 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| | | |
|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| | | |
|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u>이 경</u> | | | |
| 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| <u>단 삭제></u> | | |
|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 | | | |
| <u> 여야 한다.</u> | | | |
| <u><신 설></u> | ② 원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 | | |
| | 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 | | |
| | 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| | |
| | <u>요청할 수 있다.</u> | | |
| | 1. 기획재정부장관 | | |
| | 2. 예금보험공사 | | |
| | <u>3. 한국은행</u> | | |
| <u><신 설></u> |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| | |
| |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 | | |
| |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 | | |
| | <u>야 한다.</u> | | |